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8398 번 호

발의연월일: 2025. 2. 25.

발 의 자:정성호·김문수·김동아

김정호 • 박희승 • 최기상

주철현 • 임미애 • 이연희

안규백 • 윤후덕 • 송기헌

김남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들이 소속된 학생이나 직원이 병력동원소집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을 결석이나 휴무 처리 등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제재 규정은 적용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사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군의 조사권 등 시정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가 미비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병력소집에 동원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신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관련 예비군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국가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83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5(불이익처우의 시정) 제73조의3과 제73조의4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은 「예비군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불리한 처우의 신고와 처리는 같은 법 제10조의5에 따라설치된 예비군권익보장센터가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74조의5(불이익처우의 시정) 제
	73조의3과 제73조의4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은 「예비군법」 제10조의
	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불리한
	<u> 처우의 신고와 처리는 같은 법</u>
	제10조의5에 따라 설치된 예비
	군권익보장센터가 할 수 있다.